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6. . .

의 결 사 항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제의연월일	2026. 9. 1.
제 의 자	의 장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 안 번 호	

제의연월일: 2026. 9. 1.
제 의 자: 의 장

1. 제의 이유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,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,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활동기간: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○ 활동내용: 2025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 승인안, 예비비 지출 승인안, 2025회계연도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보고,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

○ 위 원 수: 13명

3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
○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 제9조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(안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○ 위원 명단

(성명 가나다 순)

소속 상임위원회	성 명 13명	비 고
기획행정위원회 (5)	김 영 태 김 정 도 김 지 식 유 승 헌 이 탕 모	
산업건설위원회 (4)	김 정 미 김 효 석 소 진 혁 장 미 경	
문화환경위원회 (4)	김 종 화 이 정 호 이 정 희 전 희 정	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,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22.6.15.>